

한국어·문화교육원 규정

□ 제정 : 2010. 03. 01

□ 개정 : 2017. 05.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어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어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어교육과 교사양성 및 교

재를 개발하여 보다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원대학교 부설 한국어·문화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어 교육
2. 한국어 교사와 외국어 교사연수 및 양성
3. 어학에 관한 연구
4. 언어교육에 관한 연구 및 학술조사
5. 학술논문집, 언어교육 교재 및 기타 출판물 간행
6. 언어연구 및 언어교육과 관련된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교육원의 목적에 기여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3조(원장) ① 교육원의 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

다.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부원장)

①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원장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교학부장) ①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학부장을 둘 수 있다.

② 교학부장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교학부장은 강사관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교학과장) ①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학과장을 둘 수 있다.

② 교학과장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 교학과장은 교학부장의 업무 수행을 보좌한다.

제7조(직원 및 조교) 교육원은 수원대학교 정규직원(이하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원의 행

정업무를 담당하며 조교는 직원을 보좌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본원의 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원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수립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강사의 계약해지
4. 기타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강사

제11조(정의) 본원의 강사는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임용되어 강의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임용) 강사 임용은 한국어·문화교육원 시간강사 위촉규정을 따른다.

제13조(보수) 강사의 보수는 한국어·문화교육원 시간강사 위촉규정을 따른다.

제5장 운영

제14조 (학제) 학제는 년 4학기(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로 한다.

제15조 (과정) ① 정규과정을 두고 필요한 경우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정규과정은 학생의 수준에 따로 6단계(1~6급)으로 구분되며 수업시간을 총 10주간 200시간으로 한다.

③ 특별과정의 수업기간과 등급 구분은 그 과정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제16조(장학금) ① 출석률이 80%이상이며 시험평균 90점 이상인 자에게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0만원을 감면한다.

② 출석률 100%인 자에게는 교재 교환권을 지급한다.

③ 2학기 이상 연속으로 수강한 자 중에서 직전 학기 출석률과 성적이 각각 80%, 70점 이상인 자에게는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5만원을 감한다.

④ 4학기 이상 연속으로 수강한 자 중에서 직전 학기 출석률과 성적이 각각 80%, 70점 이상인 자에게는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10만원을 감한다.

제17조(등록금) ①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입학전형료를 내고, 입학전형을 거쳐야 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본교 교직원이 수강하는 경우 등록금의 80%를 감면한다.

④ 본교 교직원의 직계가족이 수강하는 경우 등록금의 50%를 감면한다.

제18조(등록 취소와 등록금 반환) 납입한 등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개강전에 등록을 철회 또는 취소한 때에는 등록금의 100% 환불

2. 개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자퇴한 때에는 등록금의 70% 환불

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기 2분의 1 해당일 전에 자퇴한 때에는 원장의 재량에 따라

50%이내의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4.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자퇴한 때에는 등록금의 50% 환불

5. 개강일로부터 3주 이상 수강한 학생에게는 환불불가

6.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강일수에 상관없이 환불불가

제19조(출석과 진급) ① 한국어 정규과정 학생은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하고, 평균 70점 이상이며,

60점 미만 과목이 없어야 진급할 수 있다.

제20조(퇴학) 학습태도가 심히 불량하여 수업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원장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퇴학

시킬 수 있다.

제21조(졸업증과 수료증)

1. 최고급을 포함하여 2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을 수여한다.

2. 출석률 80% 이상 성적 70점 이상인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22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문화교육원 관련 제반 업무는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